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51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윤재옥・김기웅・정성국

박충권 · 서천호 · 이인선

백종헌 • 한기호 • 권영진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

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범죄 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 기준, 제2항에 따

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의5(영상정보의 이용 금지 등) ① 제37조의4에 따라 노인여가복 지시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7조의4제3항의 영 상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범죄 예방 및 시설 내 안전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제4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7조의4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관리기준 또는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제57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5 및 제2호의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 2의3. 제37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 2의4. 제37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 를 저장한 자

제61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7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 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7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자는 범죄 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보안
	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
	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u>.</u>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
	는 자는 이용자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
	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
	는 자는 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u>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u>

<신 설>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의5(영상정보의 이용 금지 등) ① 제37조의4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 7조의4제3항의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범죄 예방 및 시설 내 안전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7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 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 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 과 같음)
 - ② -----
 - _____
-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생략)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 5. (생략)

③ • ④ (생 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7조의4를 위반하여 폐
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u>아니하거나</u> 설치·관리기준
또는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네57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2의3. 제37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2의4. 제37조의5제2항제2호를

곳을 비춘 자

2의2. • 2의3. (생략)

3. ~ 6. (생 략) 제61조의2(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 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 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2의5.·2의6. (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태료) ①·② (현행 과 같음)

-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7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 한 자
- ④·⑤ (현행과 같음)